

【 7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1. 5. 21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군수에게 신청함(안 제3조)

나. 군수는 미술장식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함(안 제6조)

○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3

○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6

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양주군조례 제 호**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군수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2.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균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여부 확인은 담당공무원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위원 중 1인이 합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①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3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6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영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 장식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 주택과장, 양주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3인과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2. 미술장식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3.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제9조(위원회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거주이전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4.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서식]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건축 개요	위치				
	건축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의장재료		건축종별	
	하가(승인) 일자	사용검사 예정일		총공시비	
건축 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대표자		전화	
미술 장식 개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총설치수	조각점, 회화점, 기타점, 계점				
총금액		설치예정일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양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미술장식설치계약서 1부. 2. 작가경력서 1부. 3.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도면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설치 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해당부분만의
공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5 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의2 (전문예술법인등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3 (문화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풀동품점·필방·표구점·도자기점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4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의 종류
2.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계획결정의 내용
3. 도시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도시계획법 제42조제

第17編 文化・公報 第2章 文化・藝術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5 (관리계획의 변경승인등) ①법 제10조의2제 2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제23조의4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자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6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등) 법 제10조의2제 3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등"이라 함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23조의3제 2 항의 영업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 및 영업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7 (문화지구 지정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한 때와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3조의8 (관리계획의 평가)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짐행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7編 文化・公報 第2章 文化・藝術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본조신설 2000·10·23)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 1 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 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홍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②법 제11조제 1 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경비계획법 제1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사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

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10·23)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第17編 文化・公報 第2章 文化・藝術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0·23)

제 6 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26조 (문화의 날 설정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및 직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제2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제2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라 함은 15개국이상이 참가하여 10회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있는 대회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0·10·23>

제29조 (문화강좌설치기관등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第17編 文化·公報 第2章 文化·藝術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기타 문화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별표 1의2) <신설 2000·10·23>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24조제5항관련)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2만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제곱미터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개정 2000·10·2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46조관련)

위반행위의 종류	관련 조문	위반정도	과태료 금액
1.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	공연의 경우 매회마다	기금 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5배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시 기타 관람의 경우 매건마다	기금 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5배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편 사업소 제1장 문화관광사업소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1997. 2. 24]
조례 제1607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군수가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균린생활시설
7. 의료시설중 병원
8.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9.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10. 방송·통신시설

제 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군수는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군수에게 “별표”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군수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17편 사업소 제1장 문화관광사업소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 ②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
하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
상

부 칙 (1997. 2. 24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편 사업소 제1장 문화관광사업소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별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3조 제2항 관련)

건 축 개 요	위 치				
	건 축 주		주 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총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의 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	
건 축 주 소					
설계자	사무소명	성 명	전 화		
미술 품 개 요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 화 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 화 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 화 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신청인 (인)					
양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2부.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 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